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3-34호

고용창출(특별고용촉진)장려금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선지급 지원 대상자의 중도퇴사를 이유로 고용창출(특별고용촉진)장려금 회수 결정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3. 3. 9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



1. 건 명 : 고용창출(특별고용촉진)장려금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
2. 근 거 :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 (대표자명)	사업장관리번호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불능사유	주 소
			지원금액	회수결정금액	회수사유		
주식회사 은○선한사업회 (윤 ○ 철)	324-81-0****-0	고용창출(특별고용촉진) 장려금 회수 결정 통보	4,800,000원	1,600,000원	선지급 기간 중 자진퇴사	폐문부재	경기 안산시 단원 구 풍전로 37-24 (원곡동, 트리플렉스)

4. 공고기간: 2023. 3. 9. ~ 2023. 3. 23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수원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팀 박수민(Tel.031-231-784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